

「군포도시공사 시민행복 참여위원회」 시행내규 일부개정내규를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.

군포도시공사 사장 원명



2021년 11월 12일

군포도시공사 내규 제60호

군포도시공사 시민행복 참여위원회 시행내규 일부개정내규

군포도시공사 시민행복참여위원회 시행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2항 중 ‘노조위원장과 미래기획부장’을 ‘노조부위원장과 미래기획부장 및 해당업무 부서장’으로 한다.

제3조제3항을 제3조제4항으로 하고,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③ 위원장은 시민 참여 활성화를 위해 해당 부서장이 주관하여 공사의 해당 사업별로 분과를 나누어 운영할 수 있다.

제3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. 단,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내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 관 부 서		미래기획부
임 안 자	직 성	위 명
	직 성	위 명
	담당자 (전화)	성명 이효선 (390-7644)

신·구 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구성 및 임기) ① (생 략) ② 위원장은 경영시설본부장으로 하며, 당연직 위원은 <u>노조위원</u> <u>장과 미래기획부장</u> 으로 한다. 위촉위원은 각계각층의 시민 및 전문가 중에 사장이 위촉 한다.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.	제3조(구성 및 임기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<u>노조부위원장</u> <u>장과 미래기획부장 및 해당</u> <u>업무 부서장</u> ----- ----- ----- ----- ③ 위원장은 시민 참여 활성화를 위해 해당 부서장이 주관하여 공사의 해당 사업별로 분과를 나누어 운영할 수 있다.
④ <신설>	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. 단,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.